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리행사유

최 덕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40폐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거래관계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경제거래관계에 발생하는 채무불리행사유에 대한 문제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민사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에서 정해진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리행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별적공민들사이의 경제거래는 법적성격을 띠는 당 사자들사이의 합의(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채권채무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것으로 하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의 채권행사와 그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정확한 채무리행행 위는 경제거래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사실로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이 리한 채무리행의 성과적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론의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가 채무리행을 방해하는 주객관적사유들과 그에 따르는 법적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것이다.

채무의 불리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채무불리행은 그 원인에는 관계없이 채권자의 채권적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채무불리행은 크게 두가지 사유 즉 채무리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와 채무자가 채무 리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채무불리행의 사유에는 무엇보다먼저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가 있다.

채무리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채무리행조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사유이다. 즉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주객관적인 사유들을 통털어채무불리행사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되였던 채권채무관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가 에 따라 그의 법적효과는 서로 달리 부여되게 된다.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는 채권채무관계 설정당시와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된 후에 발생 할수 있다.

먼저 채권채무관계의 설정당시부터 채무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한 채권채무관계의 설정자체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채권채무관계는 설정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며 만일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채무리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상회복의 효과가 부여되게 된다.

팔고사기관계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된 판매대상물이 이미 다른 당사자에 의

하여 판매되였거나 분실되였다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처음부터 설정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만일 채권채무의 내용에 따라 계약대상물에 해당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였다면 구매자는 그에 대응하는 판매자의 채무리행의 불가능상태를 근거로 지불하였던 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와는 달리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리행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는 공화국민사책임제도의 허물책임원칙에 따라 효과가 부여된다.

허물책임원칙은 민사책임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며 허물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이 지닌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데 대한 주관적잘못(고의 또는 과실)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민사책임의 근거로 되는 고의와 과실이 다같이 허물일반으로 취급된다는것이다. 즉 과실이라고 하여 책임이 고의보다 결코 경감되지 않는다. 그것은 등가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민사관계에서 재산적책임의 범위가 당사자들의 허물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량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설정된 후에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사에는 관계없이 객관 적원인(불가항력적인 사유, 우연사유 등)에 의하여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의 리행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가 채무자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상청구권이나 보험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킨 경우 채권자는 그 권리의 양도를 요구할수 있다.

팔고사기관계에서 이미 대금을 지불한 판매자의 보험재산이 채무리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견치 못하였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구매자는 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판매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채무불리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앞에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로 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대상과 관련한 리익을 얻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권리를 넘겨줄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때문이다.

채무리행의 불가능사유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관적의사(허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원래의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만 리행불가능에 이르게 한자에게 손해보상과 관련한 채무리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손해보상과 관련한 채무자의 채무리행은 그 성격상채무의 기본리행과 별도의 채무리행행위가 아니라 같은 채권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동일한 채무리행행위로 인정된다.

채무불리행의 사유에는 다음으로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이 있다.

채무리행의 거절은 채무를 응당히 리행할수 있고 또 응당히 리행하여야 할 경우의 채 무리행에 대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말한다.

채권자의 채무리행청구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행위는 그 근거가 적법적인 경우와 위법적인 경우로 구분할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이 합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리행청구권 이 실현될수 없다. 즉 채무자에게 리행거절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고 불리행에 대한 의 사표시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위법적인 리행거절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경과를 근거로 채무리행을 거절하거나 맞비기기(상쇄)에 근거하여 채무리행을 거절하는것은 적법적인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근거없는 리행거절행위는 채권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 되며 채권자가 재판소에 강제리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채무자의 리행거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자면 채무리행거절행위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그 조건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이 위법적인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해당 채무를 리행할데 대한 채권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채무자의 리행거절이 그릴만 한 법적근거(합법적근거)에 기초하지 못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해당 채무리행과 관련한 지불능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것을 리유로 하는 채무자의 채 무리행거절행위는 합법적근거로 될수 없다.

그 조건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닐뿐아니라 채무리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권채무관계설정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는것과 함께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요소들의 리행을 방해하는 객관적요인의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거절행위로서 채권자의 채권적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설정에 관한 당사자들사이의 계약이 있고 그 리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여있는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리행거절에 대하여서는 채권자의 채권적권리실현을 위한 별도의 청구권이 인정되여야 한다.

그 조건에는 채무자의 주관적의사에 따르는 채무불리행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계약상채무를 리행할데 대한 권리자의 요구에 채무자가 침묵을 지키거나 채무 리행을 거절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것으로 표현된다.

민법적으로 볼 때 채무리행거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물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의 침묵도 채무리행의 거절행위로 인정된다.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사유로서의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효과를 일으킨다.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이 채무리행기간이 지난 다음 채권자의 사전청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리행청구나 손해보상청구를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적법적근거가 없는 한 제기된 청구내용에 따르는 채권자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담보하여준다.

채무자의 리행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채무리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채 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대 한 채무자의 채무리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우의 절차에 따라 재판 적청구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시 채권자는 채무불리행으로 하여 생기는 손실을 막기 위한 응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채무를 어긴것으로 생긴 손해가 커지는데 대하여 채권자는 방임할것이 아니라 응당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리행거절시 증대되는 손해의 방지대책의 범위는 채권자로서 응당히 할 수 있었고 또 그 조건에서 응당히 하여야 하였던 범위에 국한된다.

여기서 채권자가 응당히 하여야 했던 방지대책의 범위란 지금까지 민사거래에서 일상 적으로 진행되여왔고 또 누구에게나 응당한것으로 인정되여왔던 채권자의 방지대책의 범 위를 말한다.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리행거절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가능한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법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수매계약관계에서 계약된대로 수매하지 못한 대상의 긴급처리를 의뢰한 채무자(수매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으로 증대되는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우 늘어난 손해부분에 대한 채권자(생산자)의 보상청구권은 실현될수 없다.

이와 같이 채무불리행사유에 관한 문제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개별적리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해당 경제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이다.

우리는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채무불리행에 대한 문제들을 비롯한 민사관계분야에서 실 천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 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